##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784

발의연월일: 2024. 10. 18.

발 의 자:최은석・이성권・송언석

김소희 • 박준태 • 김성원

박덕흠 • 박충권 • 주진우

이상휘 · 신성범 · 고동진

권성동 • 정연욱 • 최보유

정동만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자료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 처벌수위는 증 여세액의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에,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증여받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거래)를 이용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법률 제 호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를 "역외거래 또는 가상자산의 경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	
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	
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	
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	
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	
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	
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	
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	
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	
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	1
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 100분의 40( <u>역외거래에서</u>	<u>역외거래 또는</u>

100분의 60)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경우「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 목의 가상자산거래 외의 거래 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 2. (생략)
- ② ~ ⑦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